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951호 2024. 2. 14.(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4-21호 고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

거창군 고시 제2024-23호 도로명주소 고시 ..... 3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4-253호 고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 4

거창군 의회 공고 제2024-3호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11

거창군 공고 제2024-208호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4

<b>회 략</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견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변경) 사유	비고
		유형	등급	지정면적(㎡)			
				당초	변경		
고견지구	경 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지방하천 고견천 일 원	침수 위험	가	109,029	434,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견지구는 다수의 보 및 낙차공으로 인한 계획 홍수위 상승 및 상류측 토사퇴적에 의한 통수 단면이 부족함</li> <li>고견천 좌안측 농경지는 제방이 설치되지 않아 월류 피해가 발생하며, 상수월 마을 내 우수 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주거지 내수침수 발생</li> </ul>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

2024년 02 월 일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2. 14.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76-1 등 4개소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새동네1길 8-7 등 39개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고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가조면 수월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고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거창군수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안전총괄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고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나.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일원
- 다. 사 업 량 : 하천 정비 L=2.54km, 교량(3개소) 재가설, 취수보 및 낙차공 10개소

###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1370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055-940-3654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1	가조면	수월리	35-1	4,080	1,806	답	유*희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〇〇〇-〇, 엘지메트로시티 〇〇〇-〇〇〇〇	
2	가조면	수월리	35-2	1,113	297	답	박*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양로 〇〇〇, 〇〇〇〇동 〇〇〇호(창곡동, 위례호반베르디움)	
3	가조면	수월리	35-3	1,180	261	답	유*원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〇〇〇〇	
4	가조면	수월리	35-4	1,351	221	답	박*자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개화〇길 〇〇-〇	
5	가조면	수월리	35-5	3,497	188	답	이*희	경남 거창군 가조면 용당소〇길 〇〇-〇〇	
6	가조면	수월리	40	383	114	천	임*옥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〇〇〇〇	
7	가조면	수월리	40-1	43	22	도	국	-	
8	가조면	수월리	50-2	36	36	구	조*순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〇〇〇	
9	가조면	수월리	52-2	551	551	구	국(농림수산부)	-	
10	가조면	수월리	53	858	536	답	김*영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〇길 〇〇	
11	가조면	수월리	54-2	78	78	구	박*근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〇〇	
12	가조면	수월리	57-2	229	229	답	박*묵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〇〇〇-〇, 엘지메트로시티 〇〇〇-〇〇〇〇	
13	가조면	수월리	58	149	149	천	김*	-	
14	가조면	수월리	59	314	314	천	이*근	-	
15	가조면	수월리	112-1	176	21	임	국	-	
16	가조면	수월리	113-1	121	1	천	국	-	
17	가조면	수월리	125-2	24	24	답	박*제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〇〇〇	
18	가조면	수월리	147	80	21	구	국(농림수산부)	-	
19	가조면	수월리	169	2,593	159	도	국(농림수산부)	-	
20	가조면	수월리	170-2	337	337	구	권*임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〇〇	
21	가조면	수월리	171-1	334	316	천	박*배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〇〇〇	
22	가조면	수월리	171-3	102	102	구	박*배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〇〇〇	
23	가조면	수월리	173	2,756	552	답	조*덕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〇길 〇〇	
24	가조면	수월리	177-1	909	909	임	김*영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〇길 〇〇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25	가조면	수월리	177-3	264	264	도	국	-	
26	가조면	수월리	178	1,468	1,468	천	이*균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	
27	가조면	수월리	179-1	575	481	천	오*연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	
28	가조면	수월리	180-1	674	674	임	국	-	
29	가조면	수월리	180-3	134	134	임	국	-	
30	가조면	수월리	180-4	286	286	임	박*권	경남 거창군 거창읍 ○○○-○, 그린맨션 ○동 ○○○호	
31	가조면	수월리	180-5	235	235	임	국	-	
32	가조면	수월리	186	2,106	10	답	박*주	경남 거창군 가조면 녹동○길 ○○	
33	가조면	수월리	190	83	23	답	오*규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필동○가)	
34	가조면	수월리	195-1	278	3	대	오*희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	
35	가조면	수월리	196	218	18	대	이*자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	
36	가조면	수월리	198	400	20	대	이*옥	대구광역시 달서구 옥포읍 비슬로○○○○, ○○○동 ○○○○호(옥포 이진캐스빌 ○단지)	
37	가조면	수월리	206	506	10	답	이*화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길 ○○, ○○○동 ○○○○호(진전동 제림하천○파트)	
38	가조면	수월리	210	294	3	대	정*현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	
39	가조면	수월리	218-1	168	5	대	오*연	경남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	
40	가조면	수월리	218-3	35	3	도	상수월마을회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	
41	가조면	수월리	222-2	80	40	답	국	-	
42	가조면	수월리	224-1	14,880	35	구	국(농림수산부)	-	
43	가조면	수월리	224-2	17,257	90	도	국(농림수산부)	-	
44	가조면	수월리	271	406	15	대	김*순	경남 거창군 가조면 상수월길 ○○○-○	
45	가조면	수월리	273	341	3	대	박*남	경남 거창군 가조면 상수월길 ○○-○○	
46	가조면	수월리	274-2	46	19	도	이*량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	
47	가조면	수월리	277-1	6	1	도	국	-	
48	가조면	수월리	280-1	44	1	도	배*식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	
49	가조면	수월리	282-1	42	20	도	정*현	경북 구미시 왕산로○길○○, ○○○호(임은동, 백산골든타운○차)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50	가조면	수월리	464-4	317	231	임	국	-	
51	가조면	수월리	464-5	69	69	임	국	-	
52	가조면	수월리	465-2	154	154	천	이*목		
53	가조면	수월리	466-4	46	46	천	이*조		
54	가조면	수월리	574	169	6	전	허*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 해풍아파트 ○○○호	
55	가조면	수월리	574-1	76	76	전	국	-	
56	가조면	수월리	595-1	1,319	18	구	백*흠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남로 ○○, ○○○동 ○○○○호(송현동, 우병송현하이츠)	
57	가조면	수월리	675-2	551	150	임	상수월마을회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218-1	
58	가조면	수월리	675-5	73	1	임	상수월마을회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	
59	가조면	수월리	675-6	176	43	도	상수월마을회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	
60	가조면	수월리	706	2,578	407	전	이*수	경남 거창군 가조면 용당소1길 ○○-○○	
61	가조면	수월리	708	605	604	천	신*석	거창읍 동동	
62	가조면	수월리	717	136	31	전	한*월	가조면 도리	
63	가조면	수월리	717-1	62	62	전	한*월	가조면 도리 ○○○○	
64	가조면	수월리	718-3	76	28	도	최*식	-	
65	가조면	수월리	718-4	10	10	도	최*식	-	
66	가조면	수월리	719-1	932	30	묘	김*목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	
67	가조면	수월리	719-2	221	221	도	국	-	
68	가조면	수월리	1019-1	96	96	도	이*준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	
69	가조면	수월리	1019-2	1,959	15	전	이*길	경남 거창군 가조면 용당소1길 ○○	
70	가조면	수월리	1019-4	663	11	구	한농아파트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71	가조면	수월리	1019-5	4	4	전	국	-	
72	가조면	수월리	1019-6	10	10	구	거창농지 개발조합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 ○○-○○	
73	가조면	수월리	1020-2	119	44	도	김*용	경북 김천군 김천읍 황금정	
74	가조면	수월리	1020-4	1,142	16	전	채*일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75	가조면	수월리	1020-7	121	12	전	국	-	
76	가조면	수월리	1027	119	119	천	강*경		
77	가조면	수월리	1028	2,122	2,122	임	국	-	
78	가조면	수월리	1028-1	25	25	임	국	-	
79	가조면	수월리	1028-2	367	62	임	국	-	
80	가조면	수월리	1028-3	337	298	임	국	-	
81	가조면	수월리	1029	120	120	천	이*영		
82	가조면	수월리	1029-1	16	16	천	이*영		
83	가조면	수월리	1030	57	57	천	이*영		
84	가조면	수월리	1030-1	59	59	천	이*영		
85	가조면	수월리	1031-6	182	32	대	국		
86	가조면	수월리	1035-1	81	35	대	국		
87	가조면	수월리	1366	1,312	857	천	국(국토교통부)	-	
88	가조면	수월리	1370	70,442	38,119	천	국(국토교통부)	-	
89	가조면	수월리	1370-6	4,082	1,317	제	국(국토교통부)	-	
90	가조면	수월리	1370-7	11,973	11,973	천	국(국토교통부)	-	
91	가조면	수월리	1370-9	278	11	도	국(국토교통부)	-	
92	가조면	수월리	1370-10	300	300	제	국(국토교통부)	-	
93	가조면	수월리	1370-13	573	573	천	국(국토교통부)	-	
94	가조면	수월리	1370-14	329	221	제	국(국토교통부)	-	
95	가조면	수월리	1370-15	2,122	1,687	천	국(국토교통부)	-	
96	가조면	수월리	1370-17	150	150	제	국(국토교통부)	-	
97	가조면	수월리	1370-19	338	220	제	국(국토교통부)	-	
98	가조면	수월리	1370-20	1,718	1,362	제	국(국토교통부)	-	
99	가조면	수월리	1370-21	56	56	제	국(국토교통부)	-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100	가조면	수월리	1370-22	114	46	천	국(국토교통부)	-	
101	가조면	수월리	1370-23	70	32	천	국(국토교통부)	-	
102	가조면	수월리	1370-24	67	67	제	국(국토교통부)	-	
103	가조면	수월리	1370-25	1,029	1,029	제	국(국토교통부)	-	
104	가조면	수월리	1370-26	327	327	제	국(국토교통부)	-	
105	가조면	수월리	1370-27	811	239	천	국(국토교통부)	-	
106	가조면	수월리	1370-28	151	76	도	국(국토교통부)	-	
107	가조면	수월리	1370-29	5,926	996	천	국(국토교통부)	-	
108	가조면	수월리	1370-30	414	331	천	국(국토교통부)	-	
109	가조면	수월리	1370-31	35	19	천	국(국토교통부)	-	
110	가조면	수월리	1370-33	10,708	315	천	국(국토교통부)	-	
111	가조면	수월리	1370-36	2,842	1,197	천	국(국토교통부)	-	
112	가조면	수월리	1370-44	112	32	천	국(국토교통부)	-	
113	가조면	수월리	1370-45	2,067	663	천	국(국토교통부)	-	
114	가조면	수월리	1370-46	210	210	천	국(국토교통부)	-	
115	가조면	수월리	1370-48	584	180	천	국(국토교통부)	-	
116	가조면	수월리	1370-49	63	63	천	국(국토교통부)	-	
117	가조면	수월리	1372	4,534	196	구	국(국토교통부)	-	
118	가조면	수월리	1376	11,405	467	도	국(국토교통부)	-	
119	가조면	수월리	1377	971	111	도	국(국토교통부)	-	
120	가조면	수월리	1377-1	733	266	도	국(국토교통부)	-	
121	가조면	수월리	산33-19	2,461	2	도	국	-	
122	가조면	수월리	산33-56	3,469	2	임	이*수	경남 진주시 수곡면 시묘산길 ○○○-○○	

##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 :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3조)
  - 나. 정기점검·긴급점검·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안 제4조 ~ 제6조)
  -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지원(안 제7조)
  - 라. 안전진단 대상(안 제8조)
  - 마.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바. 건축물 해체신고·허가 대상(안 제10조 ~ 제11조)
  - 사. 현장점검 및 대행 수수료(안 제12조 ~ 제13조)
  - 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안 제14조)
  - 자.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안 제15조)

4. 입법예고기간 : 2024. 2. 8. ~ 2. 15.(8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2. 16.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 화 : 055)940-8062, FAX : 055)940-8059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왼쪽 굽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거창군 건축 조례」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한 굴뚝

**제7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기준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수·보강 등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지하도 출입구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지상 3층 이상인 경우로서 3면 이상이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현장점검)**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14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 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 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
  -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건축조례」 제32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 건축물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건 축 물 현 황	대지위치			
	용 도		연 면 적	m <sup>2</sup>
	구 조		사용승인일	
	소 유 자		신청인과의 관계	
사 업 개 요	사업내용			
	사 업 비	금액	천원(보조금)	(자부담)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거 창 군 수 귀 하</p>				
<p>&lt;첨부서류&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철거 시 해체계획서 포함)</li> <li>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li> <li>3. 기타 증빙서류(필요시)</li> </ol>				

## 관계법령

### □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67호, 2023. 4. 18., 일부개정]

####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2. 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3.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고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2. 개정이유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을 정비하여 출장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출장결과보고서 검토 및 관리를 위한 보완 규정을 추가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직제개편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함(안 제6조)
  - 나. 출장자의 출장지역 관할 재외공관 신고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 다. 출장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 요구 규정 추가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3, 팩스 055-940-3169, 이메일 kylan@korea.kr

붙임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1항의 보고서의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6조(위원회의 구성)</b> ① <u>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재무과장, 경제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u></p> <p>②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해당 심사 안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p> <p><b>제9조(현지활동 등)</b></p> <p>① <u>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기간·인원·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u></p> <p>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p> <p>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p> <p>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p> <p><b>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b>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p>	<p><b>제6조(위원회의 구성)</b> ① <u>위원회의 위원은 각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u></p> <p>②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해당 심사 안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p> <p><b>제9조(현지활동 등)</b></p> <p><u>&lt;삭 제&gt;</u></p> <p>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p> <p>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p> <p>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p> <p><b>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b>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p>

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등  
록된 제1항의 보고서의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